

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

저소득층 인정 범위 ※ 저소득층 범주에 다음 2가지 사항 모두 인정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

다문화가족 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북한이탈주민"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
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출서류

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	① 기초 생활 수급자 확인서 1부 (주민자치센터 발급)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)
차상위계층	차상위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1부 (주민자치센터 발급)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)
차차상위계층	①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및 관련 증빙 자료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)
다문화가정 자녀	①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1부 ②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(부 또는 모, 해당자에 한함)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) ※혼인관계증명 포함
북한이탈주민	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(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)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) ③ 주민등록등본 1부